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수도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05호)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33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제221390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II.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제2214133호)	4
1. 제안경위	4
2. 제안이유	4
3. 주요내용	5
III. 검토의견	8
1. 총괄 검토	8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경과	8
나. 제정안의 주요 취지	10
다. 제정안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6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주요내용	17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학계의 견해	21
(3)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24
(4) 제정안의 반복입법 내용에 대한 판례변경 가능성 등	27
라. 두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29
2. 주요 내용별 검토	36
가. 정의 등(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36
(1) 행정수도의 정의	38
(2) 주변지역의 정의 등	40
나. 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4조)	42
다. 행정수도 건설의 기본방향 (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6조)	44
라.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김태년의원안 제70조)	46
마. 이전계획(김종민의원안 제17조, 김태년의원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50
바.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김종민의원안 제16조, 김태년의원안 제19조)	53
(1) 특별관리구역 지정 추가	57
(2) 특별관리구역 운영체계 개선	58

사. 인·허가등의 의제

(김종민의원안 제23조, 김태년의원안 제25조) 60

아. 위원회(김종민의원안 제30조부터 제41조까지,

김태년의원안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62

자. 관리청(건설청)(김종민의원안 제42조, 김태년의원안 제43조) 70

차.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 등(김종민의원안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김태년의원안 제49조부터 제57조까지) 71

(1) 국가예산지출의 상한 73

(2) 재산의 관리전환 등 77

카.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김종민의원안 제49조 및 제78조,

김태년의원안 제50조 및 제78조) 79

타.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김종민의원안 제52조 및 제62조,

김태년의원안 제53조 및 제63조) 86

(1)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87

(2) 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89

파.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김종민의원안 제57조, 김태년의원안 제58조) 91

(1) 지방세 감면 92

(2) 부담금 감면 94

하. 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김종민의원안 제43조 및 제65조,

김태년의원안 제44조 및 제66조) 95

거. 건축 및 주택 관련 특례(김종민의원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김태년의원안 제68조 및 제69조)	99
너.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김종민의원안 제71조)	105
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75조)	108
러. 공공시설의 관리(김종민의원안 제81조 및 제82조, 김태년의원안 제81조)	110

I.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제221390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종민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1. 4.

다. 회 부 일 : 2025. 11. 5.

2.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의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수도권은 주택, 교통, 환경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한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산업침체,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불균형 심화를 겪어오고 있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어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였으나, 국회의사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시에 남아 있어 행정수도 건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이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중추기능을 통합적으로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조

치가 필요한 상황임.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 구조를 개선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전환점을 마련해야 함.

이에 「행정수도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세종특별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수도”란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지역으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시를 말함(안 제2조)

다. 세종특별시는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행정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짐(안 제5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함(안 제11조)

마. 행정수도관리청장은 행정수도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행정수도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7조)

사. 관리청장은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0조)

아. 행정수도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수도위원회를 둠(안 제30조)

자.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수도관리청을 둠(안 제42조)

차.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제221413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태년의원 등 51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1.

다. 회 부 일 : 2025. 11. 12.

2. 제안이유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5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20여 년간 세종시 건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여전히 국회, 대통령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핵심 헌법기관은 서울에 남아있고 일부 중앙행정기관만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현재 세종시는 불완전한 수도에 머물러 있음.

행정 비효율성은 심화하고, 애초 목적이었던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임.

그 결과 수도권은 인구 과밀,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 혼잡, 환경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로 소멸 위기에 직면함.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구조를 서울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인공지능·첨단바이오·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며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치·행정·입법 등 모든 중추 기능을 완전하게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극대화, 수도권 과밀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의 극대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추진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하여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함(안 제2조).

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수도건설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되,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국가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건설청장은 행정수도건설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및 민간위원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아.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며,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청 소관 사무는 행정수도건설청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부칙 제6조).

자.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청장이 관리·운영하는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49조 및 부칙 제11조).

차. 이 법 시행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폐지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봄(부칙 제2조 및 제4조).

Ⅲ.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경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함)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대통령은 제외함)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¹⁾임.

행복도시 건설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 4월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결정²⁾하였고,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2004. 4. 17. 시행)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 전담조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대통령 소속) 및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건설교통부 소속)을 설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변경」, 2023. 12., p.11)

그런데, 2004년 7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³⁾되었고,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2004년 11월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한 균형발전사업의 차질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⁴⁾하였고, 2004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을 검토하고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 3월 「행복도시법」이 본회의에서 의결(2005. 5. 19. 시행)되었음.

「행복도시법」에 따라 2005년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11월 국

3) 청구인들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2004. 7. 12.(2004헌마554) 및 7. 15.(2004헌마566)에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음.

4) 정치권, 학술단체, NGO, 사회원로,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과 총 65회의 토론회·간담회를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① 행정특별시안, ② 행정중심도시안, ③ 교육과학도시안 등 3개의 대안을 선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변경」, 2023. 12., p.14)

무조정실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이 행복도시로 이전한 이후 2021년까지 총 43개 기관⁵⁾이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등 행복도시는 행정 기능 중심도시로서 건설되고 있음.

나. 제정안의 주요 취지

그런데, 행복도시로 이전한 정부 기관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행정부 간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⁶⁾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정책의 질 저하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국회 내 논의가 제19대국회와 제20대국회에서 이루어졌으나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임기만료 폐기⁷⁾되었으며, 국회사무처는 국회 분원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5)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이전 현황: (2012년) 국무조정실 등 14개 기관, (2013년) 보건복지부 등 16개 기관, (2014년) 법제처 등 5개 기관, (2016년)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 (2019년) 행정안전부 등 2개 기관, (2020년) 주민등록변경위원회,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6) 2019년 이해찬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국회 출장비용 및 출장횟수는 각각 550억원, 52.1만회로 추정됨. (「국회법」 개정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제2102257호)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p.6)

7) 국회의 세종시 분원 설치 관련 제19대국회 및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안 현황

- 제19대국회: 「국회법」 개정안 2건(2012. 12. 4.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1902906 / 2013. 7. 30.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1906182) 임기만료 폐기
-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안 1건(2016. 6. 20. 이해찬의원 대표발의, 2000349) 임기만료 폐기

실시8)하였음.

이와 같은 논의와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21대국회에서 국회세종지사당을 설치9)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2021. 10. 14. 시행)되었으며, 「국회세종지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3. 10. 6. 제정) 제3조 및 제4조10)에 따라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

-
- 8) - 2017년에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는 국회의 세종시 분원설치 논의와 관련하여 ① 종합적 타당성, ② 법적 현안, ③ 이전범위 등을 검토
- 2019년에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연구는 이전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국회 기관별 직무 및 업무실태 분석, ②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와 국회 연계업무 분석 및 수요조사, ③ 이전에 필요한 절차·비용, 주요시설 설치방안 등을 검토

9) 「국회법」

제22조의5(국회세종지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지사당(이하 “국회세종지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지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10) 「국회세종지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3조(국회세종지사당 설치·운영의 원칙) ① 국회세종지사당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회세종지사당은 인력·조직 및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③ 국회세종지사당에는 제4조에 따라 이전하는 위원회 등(이하 “이전대상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실,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구조·형태 등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설치 이후 증축·개축이 어렵거나 건축물의 조형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대상위원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이전 대상 위원회 등) ① 국회세종지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

1. 정무위원회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행정안전위원회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 보건복지위원회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1. 국토교통위원회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사무실은 국회세종지사당에 둔다. 다만, 본회의 또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른 겸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의사당 또는 국회세종지사당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소속 일부 부서 등이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게 됨.

한편,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사무공간인 집무실(이하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2022년 6월 「행복도시법」의 개정¹¹⁾으로 마련되었음.

2025년 12월 말 기준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에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으로 2026년 상반기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할 계획¹²⁾임.

이처럼, 행복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행정부의 업무 비효율, 행정비용 증가 등의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1. 제1항 각 호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 등 「국회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총장(이하 “국회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2. 「국회도서관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회도서관 분관(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
4. 국회입법조사처

1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국가상징구역 도시계획 완성, ‘행정수도 세종’ 밑그림 나온다」, 2025. 12. 12.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국회의 법률안 제·개정 절차는 ① 법률안 발의·제출, ② 상임위원회 심사, ③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④ 본회의 심의 순으로 이루어짐.

【 법률안 제·개정 절차 】



※ 자료: 국회사무처, 제21대국회 홍보 리플릿(2023)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7개인데,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상임위원회는 소관기관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6개 위원회임.

【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제외 상임위원회의 소관기관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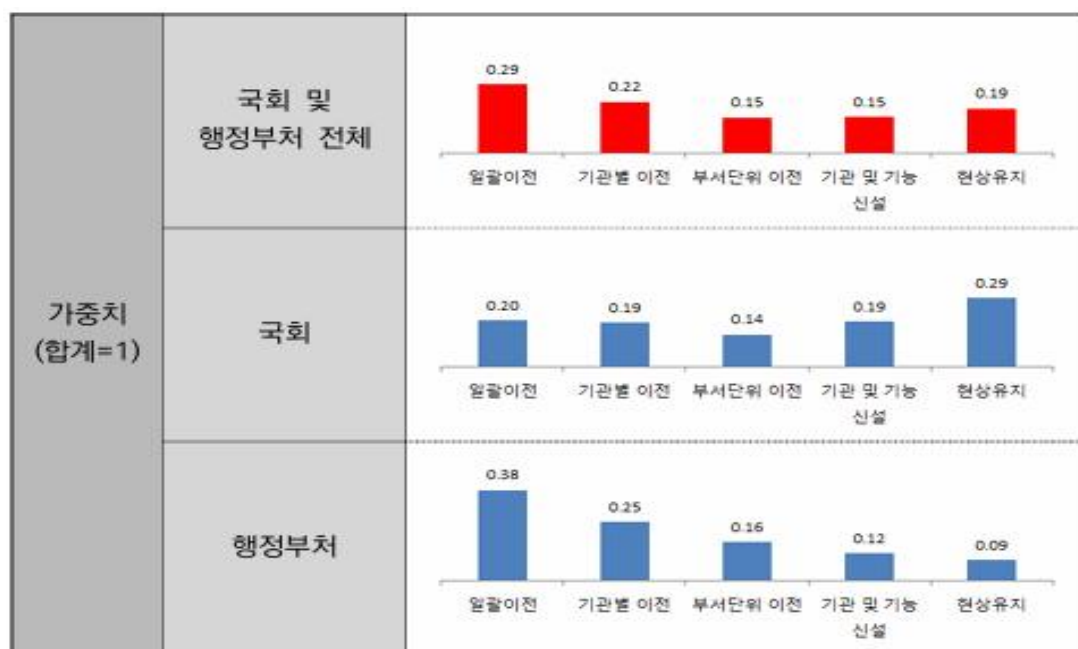
구 분	소관기관	소재지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중앙지역)	서울특별시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도 과천시
	법제처	세종특별자치시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서울특별시
	재외동포청	인천광역시
국방위원회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서울특별시
	병무청, 방위사업청	대전광역시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서울특별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로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행정부처의 업무 효율은 높아질 수 있지만, 법률안 제·개정 시 필수적인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는 여전히 서울의 국회의사당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국회가 행복도시로 완전 이전하지 않는다면 행정부의 업무 비효율, 행정 비용 문제는 지속될 수 있음.

그리고, 2019년에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국회기관의 이전 방안 등과 관련하여 ① 설문기반 분석¹³⁾, ② 인터뷰 분석¹⁴⁾ 등이 실시되었음.

설문기반 분석에서는 국회기관의 이전 유형을 ① 일괄이전(본회의 제외), ② 기관별 이전, ③ 부서단위 이전, ④ 기관 및 기능 신설, ⑤ 현상유지 등 5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국회 및 행정부처 전체는 일괄이전 방안(0.29)을 다른 방안(기관별 이전(0.22), 현상유지(0.19) 등)보다 선호하였음.

【 국회 기관 이전유형 효과 분석 】



※ 자료: 국토연구원,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2019. 7., p.111

13) 국회 소속 공무원 1,395명,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5급 이상) 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국토연구원,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2019. 7., p.99 ~ p.123)

14) 국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12명,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국토연구원,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2019. 7., p.124 ~ p.140)

인터뷰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국회 및 행정부처 공무원 모두 국회와 행정부처의 지리적 이격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국회 일괄이전과 청와대 이전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¹⁵⁾되었음.

즉, 입법부와 행정부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관점에서 국회,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과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¹⁶⁾을 행복도시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다. 제정안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런데, 제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¹⁷⁾(이하 ‘위헌

15) 국토연구원,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2019. 7., p.124 및 p.133

16) 「행복도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는 행복도시로의 이전대상에 제외되어 있는데,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및 내치기능을 담당하는 6개 부처(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17년 「행복도시법」의 개정으로 대통령 보좌 및 통치기능과의 관련성이 낮아진 행정안전부를 이전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였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삭제
6. 성평등가족부

17) 2004헌마554, 2004헌마566

결정'이라 함) 간의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주요내용¹⁸⁾은 아래와 같음.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①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②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함.

헌법기관들 중에서 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②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됨.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상징하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운용의 최고 통치권자이며 의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오늘날의 간접민주주의 통치구조하에서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중요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들 두 개의 국가기관은 국가권력의 중심에 있고 국가의 존재와 특성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중심이 되기 때문임.

18) 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 2004헌마566, 판례집 16-2하 참조

19)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

이 사건 법률은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실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함.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되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음.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①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②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반복·계속성), ③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항상성), ④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명료성), ⑤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함(국민적 합의).

위와 같은 기준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¹⁹⁾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함.

어느 법규범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면 그 개정가능성을 가지게 되는데,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²⁰⁾에 의거한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음.

한편 이러한 형식적인 헌법개정 외에도,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²¹⁾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멸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으로서 국민투표 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여지도 있을 것임.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즉, 헌법재판소는 수도는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곳을 의미하므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의 본질적인 요소이고,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 또는 국민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야 한다는 것임.

한편,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²²⁾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 할 수 없고, 현행 헌법상 국회의 입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입장임.

①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수도의 소재지는 그러한 헌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그러한 목적 실현에

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 2004헌마566, 판례집 16-2하, p.47)

20)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1) 헌법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되어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됨.

22) 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 2004헌마566, 판례집 16-2하, p.67 이하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참조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수도의 위치 자체가 반드시 헌법제정권자나 헌법 개정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 ②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에 대하여 규범성을 부여하기 어려우며, ③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보완하는 의미에서만 인정될 수 있을 뿐 관습헌법으로써 성문헌법을 변경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④ 헌법의 개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성문헌법과 관련된 개념임.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학계의 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수도의 법적 지위’와 ‘수도 변경 방식’ 등에 관한 학계의 견해가 나뉘고 있음.

먼저, 아래와 같이 수도의 관습헌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를 살펴보면,

① 일반적으로 헌법사항이라고 함은 국가의 기본적 조직에 관한 사항, 최고 국가기관의 권한 구성에 관한 사항, 개인의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적 지위를 말하는데, 어느 국가의 정체성이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 정치와 경제, 권력문제와 국가의 상징 등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이라고 하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사항은 바로 국가의 기본적 조직에 관한 사항이고, 수도의 문제는 국가 내지 정치적 공동체의 정체성 문제에

해당하므로 수도 문제는 헌법사항이 된다는 견해²³⁾와

② 세계 각국 수도의 법적 지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방국가 또는 단일국가의 형태에 관계 없이 수도는 국가의 상징으로 성문 또는 불문의 헌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²⁴⁾가 있고,

③ 헌법해석에 의한 도출가능성을 전제로 관습헌법을 추가적 관습헌법과 해석적 관습헌법으로 구분²⁵⁾하고, 수도 규정은 ‘추가적 관습’으로 헌법상의 중요한 규범이므로 공백규정이든 성문헌법 규정이든 모호하기 때문에 관습으로써 보충적 해석을 해야 할 ‘해석적 관습’은 아니라는 견해²⁶⁾도 있음.

이러한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수도 변경 방식’과 관련하여, ① 관습헌법의 개정은 국민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최소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²⁷⁾고 보거나, ②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위의 효력을 가지므

23) 김승대,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에 대한 토론문, 헌법실무연구 제6권(2006), p.305 - p.307 참조

24) 장영철, 「수도의 법적 지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0권, 2011. 10. p.289 참조

25) - 추가적 관습헌법: 성문헌법의 공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불문헌법규범을 말하는데, 이러한 불문규범은 그 규범들이 성문법규정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문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너무도 당연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치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기 때문에 성문화되지 못하였을뿐 성문헌법규정의 규범력에 못지 않은 규범력을 가지고 있음.

- 해석적 관습헌법: 성문헌법 규정이 있으나 성문헌법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헌법적 관행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성문헌법을 보완하여 해석하는 것.

26) 이광윤, 「“관습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과변호사(2005. 1.), p.17 ~ p.21 참조

27) 장영철, 「수도의 법적 지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0권, 2011. 10. p.291 ~ p.292 참조

로 이의 개정은 상당한 기간 동안의 관습의 변화로 인한 헌법의 변천이나 헌법제정 또는 헌법개정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²⁸⁾고 보고 있음.

반면, 아래와 같이 수도의 관습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견해를 살펴보면,

① 헌법은 필연적으로 헌법의 규율대상에 대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규율을 하는 데 그치므로,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헌법의 실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법제화할 권한과 과제는 입법기관에 부여되며, 헌법은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능분담을 직접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습법이 형성될 가능성은 없다는 견해²⁹⁾와

②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단지 현재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지 헌법적 규범력³⁰⁾이 있는 헌법관습으로 보기 어렵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며,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수도 이전에 관한 동의를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헌법관습이 될 수 없다는 견해³¹⁾가 있고,

28) 이광윤, 「“관습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과변호사(2005. 1.), p.21 참조

29) 전광석,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헌법실무연구 제6권(2006), p.289 - p.290 참조

30) 헌법적 규범력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만 하는 것임.

③ 수도는 국가의 상징으로서 국가적 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수도의 위치 자체가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질서 전체의 지도원리 또는 원칙규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사항에 관하여 성립한 관습헌법이 아니라 입법사항에 관하여 성립한 관습법률이라는 견해³²⁾도 있음.

이러한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수도 변경 방식’이 입법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³³⁾할 수 있다는 입장임.

(3)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³⁴⁾에 따라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실무제요」에서 설명하는 기속력의 내용과

31) 전학선, 「헌법관습에 관한 일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5집, 2005. 2., p.564 참조

32) 김주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의 허구성」, 홍익법학 제22권제1호, 2021. p.239 참조

33) 김주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의 허구성」, 홍익법학 제22권제1호, 2021. p.247 참조

34)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범위는 아래³⁵⁾와 같음.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결정에 따라야 하고, 그들이 장래에 어떤 처분이나 조치를 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결정준수의무)하며,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문제된 심판대상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저촉되는 행위의 반복을 금지(반복금지의무)함.

기속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결정주문은 심판대상에 관한 결정으로서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데에 이론이 없으나 결정이유에도 기속력이 인정 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 있음.

독일의 경우,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적 판단과 내용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수적 의견(*obiter dictum*)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지만, 결정이유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헌법해석에 관한 판시에도 기속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음.

그런데, 사회변화에 맞추어 법질서를 형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3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3개정판, 2023., p.117 - p.122. 참조

입법자의 헌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입법자에게도 기속력이 그대로 미치는지가 문제됨.

만약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종전의 법률조항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입법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입법자에게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되며, 이와 반대로 기속력으로 인해 반복입법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사회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여야 하는 입법자의 역할을 방기하는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임.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의 개선입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사건들에서, 심판대상이 된 개정 법률조항이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의 반복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의 내용이 일부라도 내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동기, 입법 당시의 시대적 배경 및 관련조항들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³⁶⁾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36)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8헌바89, 판례집 22-2하,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바409, 판례집 25-2상, 등 참조

(4) 제정안의 반복입법 내용에 대한 판례변경 가능성 등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를 행복도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 대신 국회세종지사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국회법」을 개정하였고,

국회 분원 설치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에서도 국회의 본질적·중추적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소지 가능성이 높기³⁷⁾ 때문에,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국회의 소재지인 서울에서 수행하되 이를 제외한 다른 기능은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중요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전 혹은 ‘일부’ 이전이 되어야 한다³⁸⁾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사회의 환경이 새롭게 바뀌고 수도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첫째, 입법자에 대한 기속력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가진 새로운 법질서 형성의무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과 같이 볼 것이 아니고,

37) 한국행정연구원,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2017. 12. 11., p.69.

38) 국토연구원,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2019. 7. 27., p.173.

둘째, 입법자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인 입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반복입법으로 바로 위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새로운 필요성이나 중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입법한 내용이라는 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였다는 점 등을 밝혀,

추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나 헌법소원 등의 대상이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을 기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³⁹⁾한바,

두 제정안과 같이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을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반복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집중체제를 극복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중부권 중심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약을 위해 두 제정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국회 및 대통령실 완전 이전은 헌법적 논란 해소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국회 제출된 유사 제정안(황운하의원안, 강준현의원안, 엄태영·복기왕의원안)과의 통합 검토를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9)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관련 헌법적 검토」, 2024. 4.

※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2024. 3. 28.)되어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라. 두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두 제정안의 체계를 살펴보면, 김종민의원안은 8장 8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태년의원안은 8장 8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체계 비교 】

구분	「행정수도특별법안」 (김종민의원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년의원안)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제5조(행정수도의 지위) 제6조(행정수도 건설의 기본방향)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추진) 제5조(행정수도의 명칭 등) 제6조(행정수도 건설의 기본방향)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예정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의 특례) 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 초조사)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제16조(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제18조(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의 특례) 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 초조사)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제19조(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제20조(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
이전계획 수립	제17조(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 의 이전계획)	제16조(주요 국가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7조(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이전계획) 제18조(국회 등의 이전계획)

구분	「행정수도특별법안」 (김종민의원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년의원안)
행정수도 건설사업 등	제1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20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1조(개발계획의 수립)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3조(인·허가등의 의제) 제24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5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6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7조(선수금) 제28조(준공검사) 제29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 한 준용)	제21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2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3조(개발계획의 수립)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5조(인·허가등의 의제) 제2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8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9조(선수금) 제30조(준공검사) 제31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 한 준용)
추진기구	제30조(위원회의 설치) 제3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2조(위원회의 조직) 제33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34조(위원장) 제35조(소위원회) 제3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37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8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9조(자문위원회) 제40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2조(관리청의 설치 등) 제43조(관리청장의 업무) 제4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45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46조(여론의 수렴) 제47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32조(위원회의 설치) 제3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4조(위원회의 조직) 제35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36조(소위원회) 제37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3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9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0조(자문위원회)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3조(행정수도건설청의 설치 등) 제44조(건설청장의 업무) 제4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4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47조(여론의 수렴) 제4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특별회계	제48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제49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50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 으로부터의 전입)	제49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제50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51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 으로부터의 전입)

구분	「행정수도특별법안」 (김종민의원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년의원안)
	제51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5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53조(차입금) 제54조(예비비) 제55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6조(잉여금의 처리)	제52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5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54조(차입금) 제55조(예비비) 제56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7조(잉여금의 처리)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제57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58조(주변지역지원사업) 제59조(관련 대책의 수립) 제60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61조(손실보상) 제62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63조(서류의 열람 청구 등) 제64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58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59조(주변지역지원사업) 제60조(관련 대책의 수립) 제61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62조(손실보상) 제63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64조(서류의 열람 청구 등) 제65조(자료 제공의 요청)
보칙	제65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6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제67조(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 에 관한 특례) 제69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 한 특례) 제71조(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72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제73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4조(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 한 특례) 제7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제7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77조(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66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7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행위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 한 특례) 제72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제73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4조(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 한 특례) 제7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제7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77조(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구분	「행정수도특별법안」 (김종민의원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년의원안)
	제78조(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79조(청문) 제80조(보고 및 검사 등) 제81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82조(공공시설의 관리)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8조(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79조(청문) 제80조(보고 및 검사 등) 제81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8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제85조(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86조(벌칙) 제87조(양벌규정)	제84조(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85조(벌칙) 제86조(양벌규정)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u>1년</u>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u>3개월</u>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두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두 제정안은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을 이전하여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이전계획·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추진기구로 행정수도위원회(행정수도완성위원회) 및 행정수도관리청(행정수도건설청) 설치, 특별회계 설치, 특례조항 등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주요내용 비교 】

구 분	「행정수도특별법안」 (김종민의원안)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년의원안)
체 제	8장 87개 조항	8장 86개 조항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세종특별자치시

구 분	「행정수도특별법안」 (김종민의원안)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년의원안)
	특별법」 개정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명칭 변경	
이전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대통령 (이전대상기관) 주요 헌법기관·중앙 행정기관 등	(수립)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대통령 (이전대상기관) 주요 헌법기관·중앙 행정기관 등 ※ 대통령집무실과 그 소속기관, 국회 등의 이전계획 명시
기본계획	(수립) 관리청장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수립) 건설청장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예정지역 등 지정·관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세종특별시 관할 구역 내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
행정수도 건설사업 체계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지정 → (관리청장) 개발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수립 → (관리청장)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지정 → (건설청장) 개발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수립 → (건설청장) 실시계획 승인
규제 완화	(실시계획 승인 시) 37개 항목 인·허가 의제	
추진기구	행정수도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행정수도관리청 ※ 국무총리 소속	행정수도완성위원회 ※ 대통령 소속 행정수도건설청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특별회계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 설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요·공급대책 마련 국유지·공유지 처분 제한 등	
그 밖의 사항	특례(11개 조항), 지식산업센터·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공동캠퍼스 등에 대한 지원, 보고 및 검사, 벌칙 조항 등	특례(10개 조항), 지식산업센터·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공동캠퍼스 등에 대한 지원, 보고 및 검사, 벌칙 조항 등

두 제정안과 「행복도시법」의 주요 차이점은 이전기관, 추진기구로 볼 수 있는데, ① 이전기관과 관련하여, 두 제정안은 「행복도시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국회와 「행복도시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통령 및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포함하고 있고, ② 추진기구와 관련하여, 두 제정안은 「행복도시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인 위원회로 격상함.

한편, 두 제정안의 행정수도관리청(행정수도건설청)은 「행복도시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업무를 이관하여 소관 사무를 수행하게 됨.

【 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과 「행복도시법」 주요내용 비교 】

구 분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행복도시법」
명칭	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주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중앙행정기관등 - 대통령 및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제외
추진기구	행정수도위원회(행정수도완성위원회) - 국무총리(대통령) 소속 - 위원장(2명): 국무총리 및 민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 위원장(2명): 국토교통부장관 및 민간
	행정수도관리청(행정수도건설청) - 국무총리(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구 분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행복도시법」
특별회계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주) 두 제정안에서 명칭이 다른 경우 김종민의원안(김태년의원안)으로 표기

참고로, 두 제정안을 포함하여 행정수도와 관련된 다수의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음.

【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현황 】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	회부일	비고
2210318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황운하의원	2025.05.02.	소위 계류
2211055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강준현의원	2025.06.25.	소위 계류
2213905	행정수도특별법안	김종민의원	2025.11.05.	전체회의 계류
2214133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년의원	2025.11.12.	전체회의 계류
2215514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엄태영·복기왕 의원	2025.12.24.	전체회의 계류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906호)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2025. 11. 5.)되어 있으므로, 향후 제정안 심사과정에서 심사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별 검토

이하에서는 개별 조항 중 중요사항 또는 현행 「행복도시법」과 다르게 규정하려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고자 함.

가. 정의 등(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행정수도</u>”란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지역으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u>세종특별시</u>를 말한다. 2. “<u>예정지역</u>”이란 제17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u>주변지역</u>”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행정수도</u>”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주요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전하여 국가의 정치·행정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u>세종특별자치시</u>를 말한다. 2. “<u>예정지역</u>”이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주요 국가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u>주변지역</u>”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5조(행정수도의 지위) 세종특별시는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행정수도로서의 <u>특수한 지위</u>를 가진다.	제5조(행정수도의 명칭 등) 행정수도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u>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u>」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행정수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행정수도완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생략)	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생략)

(1) 행정수도의 정의

제정안의 적용범위인 “행정수도”와 관련하여, 두 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⁴⁰⁾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종민의원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김태년의원안은 행정수도의 명칭, 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행복도시법」 제2조제1호⁴¹⁾에 따라 행복도시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⁴²⁾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5조⁴³⁾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40) 김종민의원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906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기술함.

41)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42)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예정지역”이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3)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행복도시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행복도시법」이 제정·시행된 2005년 5월부터 행복도시의 공간적 범위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었는데, 2009년 12월 행복청이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관보에 게재⁴⁴⁾함으로써 주변지역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행복도시의 공간적 범위는 예정지역으로 축소되었으나, 2010년 12월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일 2012. 7. 1.)된 이후 행복도시의 공간적 범위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되었음.

즉, 「행복도시법」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행복도시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되므로, 두 제정안은 행정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정의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세종도시 주변지역 규제 해제”, 2009. 12.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주변지역: 건설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고시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행복도시의 공간적 범위 】



※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변경(2023. 12.), p.6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가 세종특별자치시임을 명확히 규정한 두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2) 주변지역의 정의 등

「행복도시법」에 따른 주변지역⁴⁵⁾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함.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09년 12월 행복청이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45)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예정지역”이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관보에 게재⁴⁶⁾함으로써 행복도시 내 주변지역은 지정이 해제되었음.

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2조제2호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행복도시법」과 같이 정의(제2조제3호)하고, 주변지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⁴⁷⁾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있지 아니하나, 행정수도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향후 예정지역, 주변지역 확대에 따른 난개발 방지 등을 고려할 때, 두 제정안과 같이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세종도시 주변지역 규제 해제”, 2009. 12.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주변지역: 건설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군관리 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고시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7) 김종민의원안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김태년의원안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주변지역으로 지정(2005년) 후 해제(2009년)된 지역은 성장관리계획⁴⁸⁾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주변지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경우 시민의 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나. 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4조)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4조(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u>국가균형발전시책</u> 을 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u>추진</u>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u>국가균형발전시책</u> 을 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u>추진</u> 하여야 한다.

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4조는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행정수도 조성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3.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4년 1월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2004. 4. 1. 시행)되었으며, 2023년 6월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되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3. 7. 10. 시행)되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국가균형발전시책”은 “지역균형발전⁴⁹⁾시책”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다. 행정수도 건설의 기본방향(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6조)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6조(행정수도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수도를 조성하여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u>복합형 자족도시</u>(自足都市)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u>친환경도시</u> 3.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u>인간중심도시</u>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u>문화·정보도시</u> 5.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연결되어 효율적인 국토 운영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u>전국 연결도시</u>	제6조(행정수도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수도를 조성하여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입법·행정·사법 기능 중심의 <u>복합형 자족도시</u>(自足都市) 2.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를 실현·확산하는 <u>탄소중립도시</u> 3. 편리하고 안전하며 포용력을 갖춘 <u>인간중심도시</u>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u>첨단과학도시</u> 5.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u>스마트도시</u> 6. 문화예술의 창의적 발현과 혁신을 선도하는 <u>문화예술도시</u> 7.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혁신과 도전을 장려하는 <u>기회균등도시</u>

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6조는 행정수도 건설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행복도시법」은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으로 복합형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정보도시 등 4가지 항목을 규정⁵⁰⁾하고 있는데, 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6조는 탄소중립, 스마트기술, 기회균등, 전국연결 등의 가치를 추가하고 있음.

【 행정수도 건설의 기본방향 비교 】

구분	「행복도시법」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1	국가(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입법·행정·사법 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를 실현·확산하는 탄소중립 도시
3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편리하고 안전하며 포용력을 갖춘 인간중심도시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정보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정보도시	문화예술의 창의적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는 문화예술 도시
5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연결되어 효율적인 국토 운영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전국 연결도시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첨단과학도시
6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마트도시
7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혁신과 도전을 장려하는 기회균등도시

50)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自足都市)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정보도시

이는 행정수도 건설이 주요 헌법기관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과정임을 명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6조가 제시하고 있는 다각적인 가치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김태년의원안 제70조)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생략)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생략)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② <u>예정지역등은 세종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한다.</u> ③ ~ ⑦ (생략)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② <u>예정지역등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한다.</u> ③ ~ ⑦ (생략)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생략)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생략)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효과) (생략)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효과) (생략)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다만, 제2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u>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1. 토지형질의 변경(경작을 위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건조장, 잎담배 건조장 등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4. 죽목(竹木)의 벌채 또는 식재(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관상용 식물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⑤ (생략)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생략)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토지형질의 변경(경작을 위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건조장, 잎담배 건조장 등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4. 죽목(竹木)의 벌채 또는 식재(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관상용 식물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⑤ (생략)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생략) 제70조(행위제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 안에서 토지등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때에는 건설청장과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수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복도시법」 제14조⁵¹⁾에 따라 예정지역 안에서 ① 토지형질의 변경, ②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③ 토석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④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5항).

김종민의원안 제14조제1항과 김태년의원안 제14조제1항 본문은 「행복도시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태년의원안 제14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단서를 추가함.

또한, 김태년의원안 제70조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14조제1항 단서

51)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형질의 변경(경작을 위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건조장, 잎담배 건조장 등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4. 죽목(竹木)의 벌채 또는 식재(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관상용 식물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 바, 관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복청은 토지 등에 대한 분쟁 여지가 있어 철저한 관리 및 행위 제한 등이 필요한 지역은 건설청장이 행위허가로 처리하고, 토지 등의 취득이 완료되어 과도한 규제가 불필요한 지역은 일반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개발행위허가로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김태년의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세종특별자치시는 구역지정·개발행위 관련법⁵²⁾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제정안의 허가권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2)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 ④ (생략)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마. 이전계획(김종민의원안 제17조, 김태년의원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17조(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① <u>행정안전부장관</u>은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u>이전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u>위원회의</u> 심의를 거친 후 <u>대통령의</u>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전계획 중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대상 <u>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u> 등 2. 이전 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4.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5. 그 밖에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주요 헌법기관의 사	제16조(주요 국가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u>행정안전부장관</u>은 주요 국가기관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u>이전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u>위원회의</u> 심의를 거친 후 <u>대통령의</u>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전계획 중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대상 <u>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u> 등 2. 이전 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4.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5. 그 밖에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주요 국가기관등의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무 책임자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이전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이전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이전계획) ① 제16조제2항제1호의 이전대상 주요 국가기관등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따른 대통령비서실 2. 「정부조직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안보실 3.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처 4.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5. 기타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건립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시 시민 접근성, 안전성, 효율성, 국가안보의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제18조(국회 등의 이전계획) ① 제16조제2항제1호의 이전대상 주요 국가기관등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회의사당 2. 국회의원회관 3. 「국회법」 제21조에 따른 국회사무처 4. 「국회법」 제22조에 따른 국회도서관 5. 「국회법」 제22조의2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 6. 「국회법」 제22조의3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 7.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회기록원 8.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 9. 기타 국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회 내 부속시설 등 ② 국회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건설 시 제2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기타 국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을 따른다.

김종민의원안 제17조 및 김태년의원안 제16조는 주요 헌법기관·중앙 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 이전 대상기관, 절차 등을 규정하고, 김태년의원안 제17조 및 제18조는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국회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들 중에서 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②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결정⁵³⁾한 바 있으므로, 김태년의원안과 같이 대통령, 국회의 이전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바.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김종민의원안 제16조, 김태년의원안 제19조)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16조(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관리청장은 행정수도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수도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건설청장은 예정지역내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수도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3) 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 2004헌마566, 판례집 16-2하 참조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1.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이 입지한 지역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기록관이 입지한 지역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국립수목원 및 <u>국립수목원 대상이 되는 산림생태단지</u>가 입지한 지역 4.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지역 6. <u>해외 각국 주한대사관이 입지하거나 예정인 지역 및 국제기구, 국제 정치·외교·공공행정 관련 연구소 등이 입지하거나 예정인 외교 및 글로벌문화특구</u> 조성을 위한 지역 7. 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 ⑥ (생략)	1.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이 입지한 지역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기록관이 입지한 지역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국립수목원이 입지한 지역 4.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지역 6. 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 ⑥ (생략) ⑦ 건설청장은 제6항에 따른 관리계획 및 그 밖에 특별관리구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u>협의체</u>를 <u>구성·운영</u>할 수 있다.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실시계획과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을 수립⁵⁴⁾ 또는 승인⁵⁵⁾하고, 예정지역 안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고,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가 면제 또는 의제⁵⁶⁾되는 효과가 발생함.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여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그 다음 날에 예정지역의 지정은 해제⁵⁷⁾된 것으로 봄.

54)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0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②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55)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었을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6)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① ~ ③ (생략)
④ 예정지역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그 허가구역 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57)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예정지역: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수립·승인 권한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이관되므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행복청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는데,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국가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국책사업이므로,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계획·관리 권한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2021년 2월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2021. 3. 16.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입지한 지역은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것⁵⁸⁾으로 보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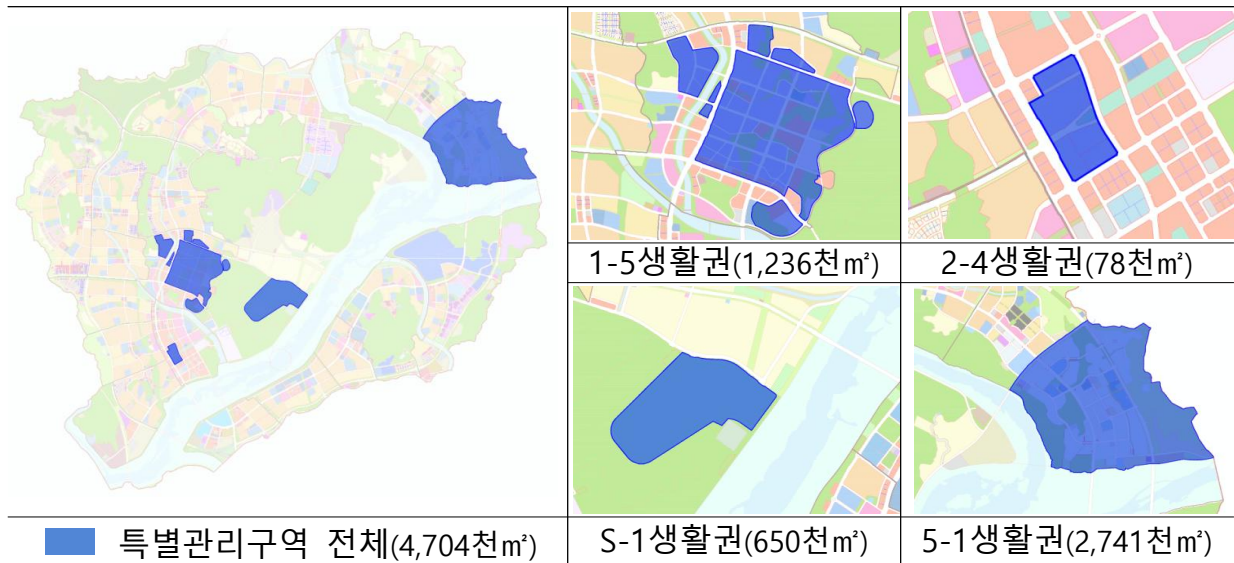
제27조(준공검사) ① ~ ⑤ (생략)

⑥ 건설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5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행복도시 내 특별관리구역 현황 】



* ①중앙행정기관(1,256천㎡), ②대통령기록관(28천㎡), ③국립수목원(650천㎡),
④국립중앙도서관 분관(30천㎡), ⑤스마트시티 시범도시(2,741천㎡)

※ 자료: 국토교통부

(1) 특별관리구역 지정 추가

김종민의원안 제16조제1항은 「행복도시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에 주요 헌법기관, 국립수목원 대상이 되는 산림생태단지, 외교 및 글로벌 문화특구 조성을 위한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김태년의원안 제19조제1항은 주요 헌법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안 대비 김종민의원안에서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는 2건 중 외교 및 글로벌 문화특구 조성을 위한 지역은 대외 관계를 상징하는 핵심 시설로서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국립수목원의 대상이 되는 산림생태단지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산림생태단지로 볼 수 있는 시설로 공립수목원⁵⁹⁾인 금강수목원이 있는바, 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공립수목원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 특별관리구역 운영체계 개선

김태년의원안의 제19조제7항은 건설청장이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 및 그 밖에 특별관리구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관련이 있는 계획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세종도시기본계획, 청사수급관리계획,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목원 진흥계획, 도서관 발전계획 등이 있음.

5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특별관리구역 관련 계획 현황 】

관련 계획		주요 내용
건설 계획	기본계획	▶ 행복도시건설 정책목표·이념 ▶ 정부청사 입지·기본방향 제시
	개발계획	▶ 중앙행정기관 배치기준·규모·방호·경관 ▶ 스마트시티 등
	실시계획	▶ 중심행정타운·스마트시범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정 관리
세종도시기본계획		▶ 도시 미래상 제시 “행정·상생·교류·자족·친환경도시”
청사수급관리계획		▶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청사수급계획 제출받아 수립
그 밖의 계획		▶ 스마트도시진흥계획 ▶ 수목원진흥계획 ▶ 도서관발전계획

※ 자료: 행복청

이처럼, 특별관리구역 내에는 각각의 계획에 따른 여러 관리주체가 있으므로, 관리주체 간 협의 및 의견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참고로,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에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가 입지한 지역을 추가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특별관리구역 운영체계를 개선하려는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제2204116호)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국토교통부는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계획·관리 및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위해 제정안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관리구역의 지정에 따라 건설 완료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등이 국가로 이전되고,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며 지방분권정책에 역행하기 때문에 특별관리구역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사. 인·허가등의 의제(김종민의원안 제23조, 김태년의원안 제25조)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23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10. (생략)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2. ~ 37. (생략) ② ~ ④ (생략)	제25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4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청장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10. (생략)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2. ~ 37. (생략) ② ~ ④ (생략)

김종민의원안 제23조제1항과 김태년의원안 제25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각 호의 개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의제하는 내용으로, 김종민의원안 제23조제1항과 김태년의원안 제25조제1항의 의제 항목은 「행복도시법」의 의제 항목과 동일함.

국토교통부는 김종민의원안 제23조제1항과 김태년의원안 제25조제1항이 의제된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상 절차나 요건 심사를 배제하지 않으며, 「행복도시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서도 의제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한바, 관련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기관	제출 의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국방부	○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이나 군사기지의 출입’은 인허가 의제 대상이 아니며, 군사시설 보호 및 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가 필요함.

※ 자료: 국토교통부

아. 위원회(김종민의원안 제30조부터 제41조까지, 김태년의원안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30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수도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수도위원회를 둔다.	제32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수도 완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수도완성위원회를 둔다.
제3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특별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행정수도 광역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8.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	제3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특별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주요 국가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행정수도 광역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제22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급에 관한 중요 사항 11. 제48조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12. 제70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32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총리, 국회사무총장, 기획재정부장관, <u>외교부장관</u>, <u>통일부장관</u>, <u>법무부장관</u>,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관리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급에 관한 중요 사항 11. 제49조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12. 제71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34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u>교육부장관</u>,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기획예산처장 및 건설청장 2. 국회사무총장 3. <u>세종특별자치시장</u> 4.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u>국회의원 각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u> 5. 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관리청장이 된다. 제33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생략) 제3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소위원회) (생략) 제3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생략)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건설청장이 된다. 제35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생략) 제36조(소위원회) (생략) 제37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생략)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37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생략)	제3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생략)
제38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생략)	제39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생략)
제39조(자문위원회) (생략)	제40조(자문위원회) (생략)
제40조(비밀 누설의 금지) (생략)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생략)
제4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생략)	제4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생략)

김종민의원안 제30조부터 제41조까지와 김태년의원안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는 각각 행정수도위원회와 행정수도완성위원회의 설치, 심의사항,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김종민의원안의 행정수도위원회와 김태년의원안의 행정수도완성위원회는 「행복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기구이지만, 각각 국무총리,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되는 점 등에서 차이점이 있음.

【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행복도시법」의 위원회 비교 】

구분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행복도시법」
명칭	○ 행정수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행정수도완성위원회 (대통령 소속)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구분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행복도시법」
심의 의결 사항	○ 심의사항 ▶ 13개 항목 ※ 「행복도시법」 규정 외 심의사항 - 특별관리구역 지정 - 이전계획	○ 심의·의결사항 ▶ 13개 항목 ※ 「행복도시법」 규정 외 심의·의결사항 - 특별관리구역 지정 - 이전계획	○ 심의사항 ▶ 11개 항목
위원	○ 30명(당연직 및 위촉직) 이내 ▶ 당연직(10명): 국무총리, 국회의원총장,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수도관리청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가 가능 ▶ 위촉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35명(당연직 및 위촉직) 이내 ▶ 당연직(19명 이하): 국무총리,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예산처장, 교섭단체 국회의원 각 2명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국회의원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행정수도건설청장 ※ 2025. 12. 기준: 2개 교섭단체 ▶ 위촉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30명(당연직 및 위촉직) 이내 ▶ 당연직(12명):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예산처 차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가 가능 ▶ 위촉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 장	○ 2명 ▶ 국무총리 ▶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2명 ▶ 국무총리 ▶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2명 ▶ 국토교통부장관 ▶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먼저, 위원회의 조직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종민의원안과 김태년의원안은 각각 국무총리, 대통령 소속으로 2명의 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한 30명 또는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서 차이가 있음.

김종민의원안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국무총리, 국회사무총장, 기획재정부⁶⁰⁾·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장관 7명과 행정수도관리청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며,

김태년의원안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국무총리,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⁶¹⁾·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의 장관 10명, 기획예산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각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2025. 12. 기준 최대 4명),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행정수도건설청장으로 구성됨.

「행복도시법」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예산처의 차관 10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12명인데,

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인 대통령 및 국회와 중앙행정기관들이 소재하여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므로, 김종민의원안과 김태

60)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법」의 개정(2025. 10. 1.)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개편되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61)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조직법」의 개정(2025. 10. 1.)으로 산업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년의원안은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이 아닌 각각 국무총리,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이에 당연직 위원도 국무총리, 국회사무총장과 장관급,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및 세종특별자치시장(김태년의원안)으로 구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두 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부처 장관의 구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두고,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등 장관 10명,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으로 구성⁶²⁾한 바 있음.

국토교통부는 행정수도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제정안에 동의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을 감안하여 당연직 위원에 세

62)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2004. 4. 17. 시행, 2004. 10. 21. 실효)

제27조 (위원회의 설치) 신행정수도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9조 (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국무총리 · 재정경제부장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문화관광부장관 · 농림부장관 · 산업자원부장관 · 환경부장관 · 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 국회사무총장 및 법원행정처장

3.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 ⑥ (생략)

중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세종특별자치시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행정수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심의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소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두 제정안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추가에 대해 살펴보면,

① 특별관리구역은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고, ② 이전기관에 국회, 대통령이 포함되는 등 이전계획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사항이므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이들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교육부는 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7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한 지역은 승인권자 소속 위원회 심의와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 심의⁶³⁾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교육기관 설립 질 관리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구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자. 관리청(건설청)(김종민의원안 제42조, 김태년의원안 제43조)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42조(관리청의 설치 등) ①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수도 관리청</u>(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리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관리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행정수도건설청의 설치 등) ①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청</u>(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종민의원안 제42조와 김태년의원안 제43조는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 행정수도관리청과 행정수도건설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김종민의원안의 행정수도관리청과 김태년의원안의 행정수도건설청은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행복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유사한 성격의 기구이며, 김종민의원안의 행정수도관리청은 국무총리 소속인 반면 김태년의원안의 행정수도건설청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인 점에서 차이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김종민의원안에 대하여 행정수도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소관사무 중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는 ‘행정각부 소속’으로 ‘청’이 설치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국토교통부 등 행정각부 소속으로 행정수도관리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차.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 등(김종민의원안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김태년의원안 제49조부터 제57조까지)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48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u>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업</u> 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u>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u>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관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49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u>행정수도 건설업무를</u>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u>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u>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운영한다.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③ 관리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⑤ 관리청장은 회계를 관리·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생략) 제50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생략) 제51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 회계에 속하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u>관리청이 조성·취득한 별표의 청사</u>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u>세종특별시 및 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u> <u>여할 수 있다.</u> 다만, 매각하는 경우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⑤ 건설청장은 회계를 관리·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0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생략) 제51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생략) 제52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 회계에 속하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u>건설청이 조성·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사</u>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u>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u> <u>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u> 다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에는 그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이 구축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물품과 예정지역 내 설립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생략) 제53조(차입금) (생략) 제54조(예비비) (생략) 제55조(세출예산의 이월) (생략) 제56조(잉여금의 처리) (생략)	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건설청이 구축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물품과 예정지역 내 설립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생략) 제54조(차입금) (생략) 제55조(예비비) (생략) 제56조(세출예산의 이월) (생략) 제57조(잉여금의 처리) (생략)

(1)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김종민의원안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와 김태년의원안 제49조부터 제57조까지는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임.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운용의 효율적 관리, 건설추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관리·운영하고 있음(「행복도시법」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두 제정안은 「행복도시법」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과 유사하지만, 「행복도시법」 제51조⁶⁴⁾의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행복도시법」 제51조는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매입비용 포함)과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상한을 8조 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음.

2024년 말 기준으로 행복도시건설지출상한(8조 5천억원) 대비 집행액은 4조 3,500억원이고,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2024년 말 기준으로 재정⁶⁵⁾한 행복도시건설 지출상한은 17조 8,400억원이며, 총사업비 집행액은 9조 1,361억원임.

6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1조(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65) 2024년말 기준 GDP 디플레이터(건설투자) 확정(2.099)에 따른 행복도시건설 지출한도

【 행복도시건설 총사업비 연도별 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수	2,099	1,000	1,071	1,104	1,138	1,193	1,326	1,349	1,403	1,486	1,517
명목가	67,958	0	0	0	69	513	2,817	4,965	3,346	7,019	8,700
불변가	43,526	0	0	0	61	430	2,124	3,681	2,385	4,723	5,735
'24년	91,361	0	0	0	128	902	4,458	7,726	5,006	9,913	12,037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수	1,519	1,541	1,544	1,551	1,604	1,653	1,698	1,718	1,867	2,013	2,071	2,099
명목가	7,109	6,048	3,560	2,746	2,419	2,494	3,299	2,996	3,805	3,496	1,498	1,060
불변가	4,680	3,925	2,306	1,770	1,508	1,509	1,943	1,743	2,038	1,737	724	505
'24년	9,823	8,238	4,840	3,715	3,165	3,167	4,078	3,658	4,277	3,645	1,519	1,060

※ 자료: 행복청

【 행복도시건설 총사업비 시설별 집행 현황 】

(단위 : 조원)

구분		계 획	집 행	비 고
계		8.50	4.35	
광역교통시설	광역도로	2.37	1.60	21개 노선
기타기반시설	환승주차장, BRT 등	0.03	0.02	
중앙행정 등	소계	4.35	1.77	
국가시설	중앙행정		1.58	정부청사, 대통령직무실 등
	국가행정		0.19	국회세종의사당, 경찰서, 세무서 등
기타 공공시설	소계	1.75	0.96	
	지방행정		0.15	시청사, 교육청사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0.46	22개 복컴
	광역복지지원센터		0.10	6개 광복
	문화체육시설		0.15	아트센터, 박물관, 종합체육시설 등
	교육시설		0.08	학교
	기타시설		0.02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 자료: 행복청

그런데, 제정안과 같이 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시법」에 규정된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인 8조 5천억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백서, 2004」에 따르면, 2004년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시행⁶⁶⁾되면서,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을 제외하고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등에 국가예산 11조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⁶⁷⁾하였는데, 이는 「행복도시법」에 규정된 상한보다 많은 액수이며, 국회 일괄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04년에 추정한 11조 3천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봄.

따라서, 제정안 심사 시 「행복도시법」과 같이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규정을 명시하되, 국가예산 지출 상한액을 재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재정경제부는 현재 행복도시는 완성단계⁶⁸⁾로서 기반시설 등에 추가로 국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낮고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국비 지출잔액 등을 고려할 때, 「행복도시법」의 국가예산 지출 상한 규정은 제정

66)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서는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규정이 없었음.

67)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백서, 2004」, 2005., p.6 ~ 7.

68) 행복도시 단계별 계획: 1단계(초기활력단계, 2007년~2015년), 2단계(자족적 성숙단계, 2016년~2020년), 3단계(완성단계, 2021년~2030년)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국토교통부는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이전에 따라 대통령직무실, 국회세종지사당의 규모 조정 등을 고려하여 지출 상한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재산의 관리전환 등

김종민의원안 제51조제2항 및 김태년의원안 제52조제2항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행정수도건설청)이 조성·취득한 별표⁶⁹⁾의 청사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⁷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안과 「행복도시법」 제46조의2제2항⁷¹⁾의 조문은 유사하지만, 매각 또는 무상양여 범위를 명시한 별표에서 김종민의원안(11개

69) 김종민의원안은 [별표]에 매각 또는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김태년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김종민의원안을 대상으로 검토함.

70)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7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 (생략)

②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별표의 청사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항목)과 「행복도시법」(17개 항목)은 차이가 있음.

【 매각 또는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 비교 】

김종민의원안	「행복도시법」
1.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시청사	1.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시청사
2.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교육청사	2.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교육청사
3.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소방서	3.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소방서
4.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4.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5.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5.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6.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아트센터	6.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아트센터
7.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광역복지시설	7.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광역복지시설
8.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은하수공원	8.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은하수공원
	9.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119특수구조단
	10.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종합체육시설
	11.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환승주차장
	12.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창의진로교육원
	13.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평생교육원
	14.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지식산업센터
9.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지방행정정보 시스템 중 홈페이지	15. 제39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지방행정정보 시스템 중 홈페이지
10. 제5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행복아파트	16. 제5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행복아파트
11. 제5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경로복지관	17. 제5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경로복지관

「행복도시법」 제46조의2는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및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신설되었고, 시청사·교육청사 등 11개 항목을 매각 또는 무상양여 대상으로 명시한 별표도 같이 신설되었음.

이후 행복청이 새롭게 조성하고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시설물 중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119특수구조단, 종합체육시설, 환승주차장,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지식산업센터 등 6개 시설물이 2022년 6월 「행복도시법」의 개정(2022. 12. 시행)으로 별표에 추가되었음.

김종민의원안의 별표는 「행복도시법」의 개정으로 추가된 119특수구조단 등 6개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미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양여된 시설물(119특수구조단, 일부 환승주차장, 창의진로교육원, 지식산업센터)과 매각 또는 양여 예정인 시설물(종합체육시설, 일부 환승주차장, 평생교육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카.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김종민의원안 제49조 및 제78조, 김태년의원안 제50조 및 제78조)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49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생략)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12. 제78조에 따른 <u>공동캠퍼스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u> 13. (생략) ③ (생략)	제50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생략)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12. 제78조에 따른 <u>공동캠퍼스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u> 13. (생략) ③ (생략)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78조(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u>관리청장</u>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u>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u>할 수 있다. ③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관리청장의 승인</u>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제78조(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u>건설청장</u>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u>그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u>할 수 있다. ③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건설청장의 승인</u>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 <u>관리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⑦ <u>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u>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 <u>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⑦ <u>건설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u>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⑧ <u>관리청장</u>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⑨ <u>관리청장</u>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8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⑩ <u>관리청장</u>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⑧ <u>건설청장</u>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⑨ <u>건설청장</u>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8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⑩ <u>건설청장</u>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78조는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임.

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법」 제63조의9제1항72)에 따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조성하는 미래형 캠퍼스로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캠퍼스를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누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가 조성하고 있음.

임대형은 2024년 9월에 서울대 등 4개 대학이 입주하였고 충남대가 2026년 3월 입주 예정이며, 분양형은 2028년 이후 공주대 등 3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세종공동캠퍼스 개요 】

-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4-2생활권 대학용지(대학4-2·7~16)
 - 조 성 : 다양한 수요대응을 위해 캠퍼스를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누어 사업시행자(LH)가 조성(총사업비 약 2,800억원 투입)
 - 구 성 : 임대형 캠퍼스(LH가 건물을 건립·기부하여 운영법인이 임대) 및 분양형 캠퍼스(LH가 부지를 조성·분양하여 입주기관이 교사시설 건립)
 - ※ (임대형) 총 연면적 약 7.3만㎡(입주공간 3만㎡, 공동이용시설 3.9만㎡)
 - (분양형) 총 부지면적 약 16.2만㎡(10개 필지, 필지별 0.9~1.8만㎡)
 - 정 원 : 총 학생정원 약 3천명(임대형 1천명, 분양형 2천명)
-

※ 자료: 행복청

7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건설청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2023년 10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세출 근거⁷³⁾와 공익법인의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⁷⁴⁾가 마련되었고, 행복청은 개별 대학의 입주공간과 도서관, 체육관 등 공용공간의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입주한 대학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공동캠퍼스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함)을 설립하고 2024년 4월부터 운영 중임.

그런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세종공동캠퍼스가 차질없이 개교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캠퍼스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하고, 「행복도시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캠퍼스 운영 및 관리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촉구⁷⁵⁾한 바 있음.

7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생략)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략)

10의2.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7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 ⑤ (생략)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⑦ 건설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75)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대의견 (11)

「행복도시법」상 공동캠퍼스 소유·운영 주체는 공익법인⁷⁶⁾이지만, 재정경제부는 2024년도 예산안 부대의견과 같이 공동캠퍼스 사무권한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2030년⁷⁷⁾에 이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입주대학들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운영될 경우 지원 축소가 우려되며 계약대상 변경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이처럼 공동캠퍼스 소유·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관계기관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공익법인이 공동캠퍼스를 소유·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⁷⁸⁾.

김태년의원안 제78조제2항은 「행복도시법」상 공익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이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⁷⁹⁾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됨.

7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77)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 중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점(법률 제19770호 부칙 제2조), 공동캠퍼스의 조성 및 입주 완료 시기가 2029년 말인 점을 고려할 때 2030년 이후로 소유권 및 관리권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8)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공동캠퍼스 부지와 임대형 캠퍼스 시설 및 행복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립한 임대형 캠퍼스 기숙사는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으나, 공익법인은 취득세 108억 6,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취득이 지연되고 있음.

79) 참고로, 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려는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제2213444호)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부대의견 이행을 위해 2030년 이후 공동캠퍼스 운영 권한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세종특별자치시는 ① 공동캠퍼스 운영의 세종특별자치시 이관을 위해 두 제정안의 공동캠퍼스와 관련된 관리청장(건설청장)의 권한을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는 대상에 교육부장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③ 2030년 이후 공동캠퍼스 운영 권한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타.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김종민의원안 제52조 및 제62조, 김태년의원안 제53조 및 제63조)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5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시장 또는 세종특별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관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	제5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속된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생략) ②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행정수도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u>양도</u>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만 해당한다)의 용도폐지 및 <u>양도</u>에 대해서는 관리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생략) ②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행정수도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u>처분</u>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만 해당한다)의 용도폐지 및 <u>처분</u>에 대해서는 건설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1)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김종민의원안 제52조 및 김태년의원안 제53조는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행정수도관리청장(행정수도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⁸⁰⁾에도 불구하고 무상

8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행정수도관리청(행정수도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복도시법」 제46조의3⁸¹⁾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⁸²⁾되어 있음.

「행복도시법」 제46조의3은 행복청이 조성하거나 설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한 도시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추가사업을 실시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한 시설 등을 유상으로 재매입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2018. 12. 18. 신설)되었음.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김종민의원안 제52조 및 김태년의원안 제53조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공공시설을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8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82) 다만, 행복도시법의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고 ‘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임.

나 새로운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수도건설청에 무상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한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종전의 공공시설을 행정수도관리청(행정수도건설청)에게 양여하고, 새로 귀속받은 공공시설을 다시 행정수도관리청(행정수도건설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행정수도관리청(행정수도건설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어떠한 대가 없이 가져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조문은 효과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신속한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2) 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김종민의원안 제62조제2항 및 김태년의원안 제63조제2항은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행정수도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⁸³⁾」,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83) 김태년의원안 제63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규정함.

국유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7조⁸⁴⁾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⁸⁵⁾에서 규정하고 있음.

과거 공유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⁸⁶⁾하고 있었는데,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2005. 8. 4.)됨에 따라, 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84)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8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86) 「지방재정법」 [법률 제7159호, 2004. 4. 1. 시행]

제82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김종민의원안 제62조제2항의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국유재산법」 제2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서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은 매각, 양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김종민의원안 제62조제2항의 ‘양도’ 및 김태년의원안 제63조제2항의 ‘처분’은 「국유재산법」 제27조⁸⁷⁾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서 규정되어 있고 문맥에 맞는 ‘매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파.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김종민의원안 제57조, 김태년의원안 제58조)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57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8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87)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생태계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생태계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세 감면

김종민의원안 제57조제1항 및 김태년의원안 제5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복도시법」 제52조제1항⁸⁸⁾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⁸⁹⁾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

8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음.

이처럼 ① 지방세 특례는 지방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점, ② 김종민의원안 제57조제1항 및 김태년의원안 제58조제1항의 지방세 감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점을 고려할 때,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김종민의원안 제57조제1항 및 김태년의원안 제58조제1항의 경우 일반 납세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반면, 국토교통부는 김종민의원안 제57조제1항 및 김태년의원안 제58조제1항이 효과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신속한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언적 의미의 규정인 김종민의원안 제57조제1항 및 김태년 의원안 제58조제1항은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측면과 아울러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 측면에서의 입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부담금 감면

김종민의원안 제57조제2항 및 김태년의원안 제58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복도시법」 제52조제2항⁹⁰⁾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재정경제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제5항⁹¹⁾에 따라 부담금 감면은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별도 법률에 감

90)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9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의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면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지·농지의 보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 감면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하. 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김종민의원안 제43조 및 제65조, 김태년의원안 제44조 및 제66조)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43조(관리청장의 업무) 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10. (생략) 11. 제65조에 따른 예정지역등 안에 <u>서의 도시·군계획의 수립</u> 12. ~ 18. (생략) 제65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u>예정지역등 안에서는</u>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관리청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u>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리청장”으로 본다. ② <u>예정지역등 안에서는</u>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	제44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11. (생략) 12. 제66조에 따른 예정지역등 안에 <u>서의 도시·군계획의 수립</u> 13. ~ 18. (생략) 제66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u>예정지역등 안에서는</u>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구하고 <u>관리청장이</u> 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청장”으로 본다. ③ 관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④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관리청에 행정수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청장”으로 보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관리청”으로 본다. ⑤ 예정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장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구하고 <u>건설청장이</u> 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② 건설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③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건설청에 행정수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보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건설청”으로 본다. ④ 예정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완료를 공고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청장”으로 본다. ⑥ 세종특별시장이 제15조에 따라 예정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도지사”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⑤ <u>세종특별자치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2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u> 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15조에 따라 예정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계획⁹²⁾은 ①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종합계획, ②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 종합계획, ③ 시 또는 군 등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등으로 구분되며,

92)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1의2. 초광역권계획: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이하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⁹³⁾은 시 또는 군 등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간구조, 인구배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최상위 공간계획임.

김종민의원안 제65조제1항은 예정지역등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김종민의원안 제65조제2항과 김태년의원안 제66조제1항은 관리청장(건설청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복도시법」 제60조⁹⁴⁾에도 유사한 내용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9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②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③ 건설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④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건설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보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건설청”으로 본다.

⑤ 예정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되어 있음.

다만,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예정지역 안에서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은 지방분권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김태년의원안 제66조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김태년의원안 제66조를 따르는 경우 관리청장(건설청장)의 업무를 규정한 김종민의원안 제43조제11호와 김태년의원안 제44조제12호의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거. 건축 및 주택 관련 특례(김종민의원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김태년의원안 제68조 및 제69조)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67조(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시의회는 예정지역의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관리청장의 의견	제68조(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예정지역의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건설

⑦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관리청장은 행정수도의 미관·경관 향상 및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시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8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관리청장이 수행한다. ② 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관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관리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청장은 건축법령 및 건축기	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건설청장은 행정수도의 미관·경관 향상 및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본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69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예정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4조 및 제96조를 적용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관리청장이 수행한다.	제69조(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검사(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때에는 건설청장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김종민의원안 제68조 및 제69조는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주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관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임.

행복도시건설 초기 단계에서 건설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⁹⁵⁾와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⁹⁶⁾가 도입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건축·주택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2012. 7.)한 이후 건축·주택 관련 사무를 처리할 역량이 확보됨에 따라, 2017년 「행복도시법」이 개정되어 행정중심

95) 「행복도시법」 제6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연혁: ① 「행복도시법」 제정(2005. 3.) 시 ‘「건축법」에 관한 특례’ 도입 → ② 「행복도시법」 개정(2008. 2.)으로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추가 → ③ 「행복도시법」 개정(2017. 10.)으로 삭제

96) 「행복도시법」 제6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연혁: ① 「행복도시법」 제정(2005. 3.) 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특례’ 도입 → ② 「행복도시법」 개정(2006. 12.)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로 제목을 변경하고 내용도 변경 → ③ 「행복도시법」 개정(2017. 10.)으로 삭제

북합도시건설청장이 건축·주택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던 건축 허가 등 건축·주택 관련 사무는 2019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하고 있음.

김종민의원안 제68조 및 제69조가 규정될 경우 2019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하고 있는 건축·주택 관련 사무를 다시 관리청장이 수행해야 하므로, 김종민의원안 제68조 및 제69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김종민의원안 제43조제12호⁹⁷⁾는 제68조에 의한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법」에 의한 사무를 관리청장의 업무로 규정하였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한편, 김종민의원안 제67조 및 김태년의원안 제68조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예정지역에 대한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관리청장(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려는 내용이고, 김태년의원안 제69조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예정지역 안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행복도시법」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⁹⁸⁾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

97) 「행정수도특별법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제43조(관리청장의 업무) 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제68조에 의한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법」에 의한 사무

되어 있음.

「행복도시법」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장 간에 분리된 도시계획 권한과 건축·주택 관련 사무의 정합성을 높이고 이관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축조례 제·개정 및 주요 건축허가 과정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설(2018. 8. 14.)되었음.

그런데, 김종민의원안에는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는 규정(안 제67조)되어 있지만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3(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예정지역의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경관 향상 및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검사(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때에는 건설청장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김종민의원안

제71조(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수도법」 및 「하수도법」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리청장”으로 본다.

1.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2.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② 관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너.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김종민의원안 제71조)

김종민의원안 제71조는 「수도법」⁹⁹⁾ 및 「하수도법」¹⁰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관리청장이 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복도시법」 제63조의2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¹⁰¹⁾되어 있음.

99) 「수도법」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00) 「하수도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은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고,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임.

「행복도시법」 제63조의2는 행복도시건설 초기 단계에서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발계획 등과 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에 따라 규정(2006. 12. 28. 신설)되었음.

그런데, 2014년 1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행복청 소관 업무 중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¹⁰²⁾하도록 변경되어, 「행복도시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각각 위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르게 규

10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수도법」 및 「하수도법」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1.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2.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② 건설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 칙 <법률 제12206호, 2014. 1. 7.>

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관계) ①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한다.

1. ~ 8. (생 략)

9.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

정되어 있음.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06호> 부칙 제7조에 따라 2014년에 위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하였는데, 김종민의원안 제71조가 입법되는 경우에는 김종민의원안 제71조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간에 ‘체계정당성’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임.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원리¹⁰³⁾이므로,

체계정당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김종민의원안 제71조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정비계획이 세종특별자치시 전체에 공급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예산중복투자 방지 등 효율적 계획수립과 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103)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66, 판례집 16-2하, p.316 참조

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75조)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7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u>외국학교법인</u>(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u>교육부장관의 승인을</u> 받아 예정지역에 <u>외국교육기관을</u>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에 「<u>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예정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7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u>외국학교법인</u>(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u>건설청장의 추천을 받은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u> 받아 예정지역에 <u>외국교육기관을</u>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에 「<u>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예정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75조제1항은 외국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조¹⁰⁴⁾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

¹⁰⁴⁾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

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김태년의원안 제75조제1항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건설청장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추가함.

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75조제2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¹⁰⁵⁾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¹⁰⁶⁾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¹⁰⁷⁾은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3.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10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0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③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0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추천권자
 - 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
 -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려는 경우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태년의원안 제75조제1항과 같이 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러. 공공시설의 관리(김종민의원안 제81조 및 제82조, 김태년의원안 제81조)

김종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81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③ (생략) 제82조(공공시설의 관리) 행정수도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제81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③ (생략)

김종민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 제81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¹⁰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대해서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¹⁰⁹⁾를 준용하려는 내용으로,
「행복도시법」 제65조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¹¹⁰⁾되어 있음.

「행복도시법」 제27조¹¹¹⁾, 제6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

1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1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 ④ (생략)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1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 ③ (생략)

11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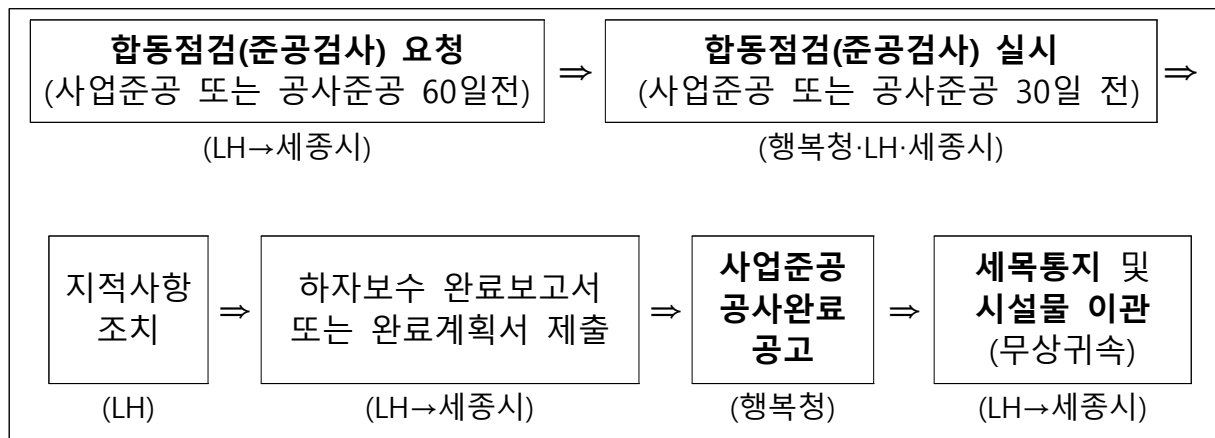
② ~ ⑤ (생략)

⑥ 건설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⑦ 건설청장 또는 제6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중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택공사가 신규 설치한 공공시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준공검사서 발급 및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관리청인 세종특별자치시에 통지하고, 공공시설은 통지한 날에 세종특별자치시에 무상 귀속됨.

【 공공시설 이관 절차도 】



※ 자료: 행복청

김종민의원안 제82조는 「행복도시법」 제66조¹¹²⁾와 같이 공공시설이 준공 후 세종특별자치시에 귀속될 때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 7.) 전 준공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공백을 방지하고자 사업시행자에게 임시로 의무를 부여한 조항으로, 이로 인해 제81조(「행복도시법」 제65조)와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바, 김태년의원안과 같이 이를 삭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90